

영주시 공고 제2024 - 454호

「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,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3월 12일

영 주 시 장



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, 대규모 관광사업 지원 한도를 상향하여 대형 관광시설 투자 수요를 확대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「경상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」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항 및 용어 정비(안 제24조의4)
- 나. 대규모 관광사업 투자 지원한도 변경(안 제28조의3)

3. 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4월 1일 까지 의견을 영주시장(참조 투자유치과장)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, 전화 또는 E-mail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 주소, 연락처

다.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우) 경북 영주시 시청로 1(휴천동 470)

받는사람 : 영주시장(참조 : 투자유치과장)

연락전화 : (054)639-6182

E-mail : frags@korea.kr, FAX : (054)639-6169

[붙임]

영주시 조례 제 호

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9. “민간투자사업”이란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.

제9조 중 “「영주시세 감면 조례」”를 “「영주시 시세 감면 조례」”로 한다.

제24조의4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6호에 따른 지역특화산업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초광역권산업

제28조의3제2항 중 “5퍼센트 내에서”를 “10퍼센트 내에서”로, “최고 60억원”을 “최고 200억원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2항 중 “제28조제1호”를 “제28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2.·3. (생략)

② (생략)

제28조의3(관광사업 지원) ① (생략)

② 시장은 관광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28조에 의한 대규모 투자에 해당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5퍼센트 내에서 기업당 최고 60억원까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③ ~ ⑤ (생략)

제30조(중복지원의 금지) ① (생략)

② 제28조제1호의 대규모 투자 기업에 대한 특별지원과 제22조, 제23조, 제24조의2에 의한 보조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
③ (생략)

2.·3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28조의3(관광사업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10퍼센트
내에서 ----- 최고 200억원-----

-----.

③ ~ ⑤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중복지원의 금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제28조제1항-----
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자치법규명	영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토사항	
주요내용	<p>※ 자치법규안에 대한 조문별 찬성·반대 여부와 그 이유 등을 기재합니다. (내용이 많은 경우에는 별도 붙임으로 작성합니다.)</p>

상기와 같이 자치법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.

의견 제출자	소속 또는 주소	연락처	
	성명	(서명 또는 날인)	